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자금 2020년 GUIDE BOOK



CONTENTS

01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개요	02
SESSION 1. 총괄	02
SESSION 2. 변경사항	03
SESSION 3. 지원한도 및 내역	05
02 자금신청 및 지원절차	07
SESSION 1. 프로세스	07
03 경영안정자금 세부내용	08
SESSION 1. 이차차액보전	08
SESSION 2. 매출채권보험 보험료지원	19
SESSION 3. 협약보증 지원	20
04 구조고도화자금 세부내용	21
SESSION 1. 지원대상	21
SESSION 2. 지원내용	23
SESSION 3. 구비서류	26

01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개요

session1

총괄

■ 경영안정자금

- 지원대상 :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등
- 지원규모 : 9,500억원
 - ① 이자차액보전 (8,300억원, 시중은행 협조용자)
 - 지원내용 : 기업 운전자금에 대한 이자차액보전
 - 지원한도 : 일반기업 5억원 (우대지원* 5억 ~ 50억원)
 - * 여성장애인벤처기업, 우리시 전입기업, 해외유턴기업, 성장기업 등 우대지원
 - 보전금리 : 기본 0.2% ~ 2.0% + 우대 0.2% ~ 1.0%
 - 지원기간 : 1년, 2년, 3년 (단, 수출자금은 6개월~1년)
 - ② 매출채권보험 가입지원 (1,000억원, 신용보증기금 협력지원)
 - 지원내용 : 매출채권보험 보험료 지원 (업체당 5백만원이내, 보험료의 80%)
 - ③ 협약보증 지원 (200억원, 기술보증기금 협력지원)
 - 지원내용 : 기업채무에 대한 보증지원 (업체당 5억원이내, 보증비율100%)
- 신청기간
 - 이자차액보전 : 일반자금(분기별), 목적자금(상시))
 - 매출채권보험 가입지원 : 한도 소진시까지
 - 협약보증 지원 : 한도 소진시까지
- 대출은행 및 신청기관
 - 이자차액보전 : 기업, 씨티, 신한, 우리, KB국민, KEB하나, NH농협, 수협 중앙회, 부산, JB전북, 산업, 광주, 대구, 수출입, 경남 (15개 은행)
 - 매출채권보험 가입지원 : 신용보증기금 인천신용보험센터
 - 협약보증 지원 : 기술보증기금 인천지역 영업점

■ 구조고도화자금

- 지원대상 : 제조업, 재해기업 등
- 지원규모 : 550억원 (시 중소기업육성기금)
- 지원내용 : 기업 시설자금에 대한 저리용자
- 용자한도 : 업체당 2억 ~ 200억원*
 - * 재해 2억원, 기계공장 10억원(스마트공장도입 20억원), 지식산업센터 200억원
- 용자금리 : 무이자 ~ 2.6% (분기별 변동)
 - * 재해 무이자, 기계공장 2.4%(스마트공장도입 1.5%), 벤처창업 1.9%, 지식산업센터 2.6%
- 용자기간 : 5년, 8년
- 신청기간 : 한도 소진시까지
- 대출은행 : 시 금고 전대약정 체결은행

01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개요

session2

변동사항

■ 경영안정자금

항목	기존	2020년
절차 간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금별 절차구분 - 일반 : 온라인심사 - 목적/시설 : 대면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사절차 간소화 - 업체에서 편의에 따라 선택 (온라인심사 또는 대면심사)
접수시스템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금접수 사이트 - 접수방법 : 온라인 - 접수사이트 : 비즈오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의기능 확대 - 서류보완 프로세스 업그레йд 등 ✓ 사후관리기능 추가 - 사후관리전용 페이지 개설
우수기업 한도산정 기준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수기업 한도산정 기준 - 유효기간 이내 2회에 걸쳐 총한도(1회)로 우대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도산정기준 변경 - 유효기간 이내 횟수제한 없이 항상 우대지원
지원 이자율표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이자율 : 0.3~2.0% - 대출금리 구간 : 18개 - 구간별 초과누진율 합산하여 지원이자율 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구간 이자율 조정 - 상위5개구간 이자율의 금리 대비 비율이 과다하게 책정 - 구간별 이자율 비율을 차등 적용하여 지원이자율 산출
매출채권 보험가입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의 연쇄도산 방지를 위한 지원책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출채권보험 보험료 지원 - 총 보험료의 80%이내, - 기업당 5백만원 이내 지원
협약보증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성·성장성을 기반으로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원시책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약보증 지원 - 기업당 5억원까지 채무보증 - 보증비율100%, 보증료0.2%p감면
벤처기업 우대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기업내 우대항목에 벤처기업은 포함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기업자금 우대항목에 벤처기업 추가 - 지원한도 : 5억원 이내 - 지원율 : 기본+0.5%p 추가
해외유턴 기업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유턴기업에 대한 별도 자금지원시책 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확충자금 항목에 해외유턴기업 추가 - 지원한도 : 30~50억원 이내 - 지원율 : 기본+0.5%p 추가

01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개요

session2

변동사항

■ 구조고도화자금

항목	기존	2020년
기금융자 대출금리 변동기준 체계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출금리 변동기준 및 체계 부재 - 대출금리를 결정하는 금리 체계가 별도로 없으며, 필요시 정책적으로 판단하여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별 금리결정 체계마련 - 기준대출금리 : 자금조달비용 - 사업별 대출금리 : 기준대출금리 ±가감금리 - 변동주기 : 분기별
스마트공장 도입기업 기계자금 우대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대지원책 미비 - 정부 및 시에서 추진하는 스마트공장보급확산 사업의 인천지역 성과극대화를 위해 우대지원책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공장도입기업에 대한 우대자금 신설 - 지원대상 : 중기부 협약완료기업 - 지원한도 : 최대 20억원 이내 ※ 기본한도 10억원과는 별개지원 - 지원한도 : 기준대출금리-0.9%p
공장확보 자금 한도산정 기준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분 잔금에 대해 지원 * 시가표준액 기준 - 중도금 집단대출을 통한 분양시 지원가능한 잔금비율이 낮아, 시자금의 지원혜택이 미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단중도금 대출건도 구조고도화 자금으로 지원 - 중도금 대출건을 잔금범위에 포함하여 지원 ※ 분양권전매 경우에도 승계되는 중도금대출건이 불가피한 경우였을 때 동일하게 적용
시설자금 지원업체 전업률 기준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업 판단기준 - 전업률 : 30% 이상 - 공장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업률 상향조정 - 전업률 강화 : 30% → 50% - 지원기간 8년간 동안 전업률이 30%미만으로 하락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

01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개요

session3

지원한도
및 내역

■ 경영안정자금 (총규모 9,500억원)

① 이차차액보전지원 (8,300억원)

구분	지원규모	지원대상	지원한도	지원내역	
일반지원	2,700억원	일반기업	5억원	이차보전(기본지원)	
		우 대 기 업	FTA인증 수출기업 FTA활용 성공사례 수상기업 8대 전략산업, 소상공인 경영대상 수상기업 가족친화기업, 품질우수제품 선정기업, 벤처기업	5억원	이차보전 (기본+우대지원을 0.5%)
			유망중소기업 아름다운공장 선정기업 중소기업인대상수상기업 (18년이전 수상자)	10억원	이차보전 (기본+우대지원을 0.5%)
			비전기업	20억원	이차보전 (기본+우대지원을 0.5%)
			중견성장사다리기업 중소기업인대상수상기업 (18년 수상자부터 적용)	30억원	이차보전 (기본+우대지원을 0.5%)
			여성기업	5억원	이차보전 (기본+우대지원을 0.55%)
			장애인기업	5억원	이차보전 (기본+우대지원을 0.7%)
			(사)함께하는인천사람들	2천만원	이차보전 (기본+우대지원을 0.5%)
목적성 지원	산업확충 기업	해외유턴기업	30-50억원	이차보전 (기본+추가지원을 0.5%)	
		우리시 전입기업	30억원		
		강화산업단지 입주기업	5억원		
		서운산업단지 입주기업	15억원		
		산단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5억원		
		재해기업	10억원		
	수출기업	700억원	수출계약 또는 최근 1년 이내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20억원	이차보전 (기본+추가지원을 0.2%) * 은행 금리우대 별도
	창조경제 혁신기업	100억원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추천기업	3억원	이차보전 (기본+추가지원을 0.5%)
	고성장 기업Ⅰ	2,200억원	3개년도 매출액 평균 증가율이 20% 이상인 기업	20억원	이차보전 (기본+추가지원을 0.5%)
			매출액 100억원(또는 최근월 고용인원 100명) 이상기업이며, 3개년도 매출 액 평균 증가율이 5% 이상인 기업	20억원	이차보전 (기본+추가지원을 0.3%)
	고용창출 기업Ⅰ	2,400억원	3개년도 종업원수 평균 증가율이 15% 이상인 기업	20-50억원	이차보전 (기본+추가지원을 1.0%)
	고용창출 기업Ⅱ		매출액 100억원(또는 최근월 고용인원 100명) 이상기업이며, 3개년도 종업원 수 평균 증가율이 5% 이상인 기업	20-50억원	이차보전 (기본+추가지원을 0.5%)
	고용창출 기업Ⅲ		일자리창출우수기업	20-50억원	이차보전 (기본+추가지원을 0.5%)
고용창출 기업Ⅳ	신청일기준 직전 1년간 고용증가 10명 이상		20-50억원	이차보전 (기본+추가지원을 0.5%)	

※ 대출기간 : 1년(만기일시상환), 2년(만기일시상환), 3년(6개월거치 5회 분할상환)
(단, 합인사 : 4년, 수출기업 : 6개월, 1년(만기일시상환))

※ 고용창출기업 I~IV : 최근월 고용인원 100명 이상 기업 50억원 이내, 50명 이상 기업 30억원 이내

01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개요

session3

지원한도 및 내역

■ 경영안정자금 (총규모 9,500억원)

② 매출채권보험 보험료지원 (1,000억원)

지원대상	지원한도	지원내역
인천시 경영안정자금 지원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제조업, 건설업, 자동차정비업 등)	10억원 (보장금액 기준)	업체당 5백만원 이내 보험료 지원 (업체부담 보험료의 80%)

③ 협약보증 지원 (200억원)

지원대상	지원한도	지원내역
소재·부품·장비 제조업 또는 기술기업	5억원	보증지원 (보증비율 100% 보증료0.2%할인)

■ 구조고도화자금 (총규모 550억원)

구분	지원사업		융자한도	융자기간	융자금리
업종 구조 고도화 (320억원)	구조 고도화 자금 (기계)	자동화	10억원	8년(3년거치 5년 분기별)	기준대출리 (변동)
		연계운전 (최대2억원)		3년(1년거치 2년 분기별)	
		소기업육성	4억원	8년(3년거치 5년 분기별)	
		연계운전 (최대1억원)		3년(1년거치 2년 분기별)	
	우대	스마트공장도입	20억원	8년(3년거치 5년 분기별)	기준 -0.9%p (변동)
		연계운전 (최대4억원)		3년(1년거치 2년 분기별)	
	기업 시설 자금 (공장)	공장확보 (구조고도화산단 환경 개선사업)	10억원	8년(3년거치 5년 분기별)	기준대출리 (변동)
		기업부설연구소설치	10억원	8년(3년거치 5년 분기별)	
		국가산단 주차장설치	5억원	8년(3년거치 5년 분기별)	
		벤처창업자금 (20억원)		7억원	8년(3년거치 5년 분기별)
	운전자금 (최대3억원)		5년(2년거치 3년 분기별)		
산업 구조 고도화 (230억원)	산업 기반 조성 (230억원)	지식산업센터건설 (200억원)	200억원	8년(3년거치 5년 분기별)	기준대출리 + 0.2%p (변동)
		재해기업 (30억원)	2억원	5년(2년거치 3년 분기별)	무이자 (고정)

※ 스마트공장도입 기계자금 한도 : 기계공장자금내 150억원으로 제한함

※ 기준대출금리 : 분기별 공시 (1월·4월·7월·10월 변경, 비즈오케이 공시)

02

자금신청 및 지원절차

session1

프로세스

■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 및 지원절차

1 홈페이지 접속	비즈오케이사이트(http://bizok.incheon.go.kr) 온라인접수
2 기업정보등록 <small>※ 사전등록 절차</small>	<p>[신청경로] 회원가입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기업정보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업로드 서류 사업자등록증, 최근 결산 2개년도 재무제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3부 (최근 1개월분, 최근 결산 2개년도의 마지막월 신고서 2개월 분) 공장등록증(건축물관리대장/임대차계약서), 각종 우대 및 평가서류(해당기업) ※ 서류업로드 및 사업장 필수정보(업종코드 등)까지 입력을 완료해야만 접수진행 가능
3 온라인 신청 <small>※ 자금개시 후 등록가능</small>	<p>[신청경로] 비즈오케이 메인화면 상단 기업지원 - 온라인 기업지원사업신청 클릭 ⇒ 금융 관련 사업 검색하여 해당 자금지원 사업명 찾아 클릭 ⇒ 기업지원사업신청 클릭 ⇒ 스캔파일 업로드 및 정보입력 ⇒ "신청" 버튼 클릭으로 접수 완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업로드 서류 자금사용(사업)계획서(소정양식),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및 서약서(소정양식) 제조업이 아닌 경우 업종증빙서류, 기타 자금별 추가서류 입력사항 : 대출금액, 대출은행, 담보제공방법 등
4 심사	<p>일반경안자금 (대면심사 또는 온라인심사) 목적자금 및 구조고도화 자금 (대면심사 및 온라인심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대출상담 : 2020년부터 대출은행 도장날인 절차 폐지 ※ 자금신청기업은 모두 대면심사 또는 온라인심사 중 택일 <p>담당자가 서류상태 등을 통해 결정하여 온라인 접수승인 후 향후 진행사항을 SMS로 통보 대면심사일 경우 마이페이지-온라인기업지원신청내역에서 방문날짜 확인 후 ITP 방문</p>
5 서류 보완/재신청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보완서류 업로드 후 재신청 진행
6 지원결정/통보	<p>I. 일반경안자금 (매 주차별 통보) II. 목적자금 및 구조고도화 자금 (매 주차별 통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수한도 미소진시 평가 없이 주차별로 진행 ※ 비즈오케이 마이페이지 온라인기업지원신청내역에서 통보서 출력후 은행제출 및 절차에 따른 대출실행

session1

이자차액 보전

■ 지원대상

구 분		내 용	
기본 요건	제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업률 30%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업률 : 재무제표 손익계산서의 "총매출액" 중 "제품매출"이 차지하는 비율 ※ 접수시 뿐만아니라 지원중 계속적으로 충족되어야 함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장등록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시설면적이 500㎡ 이상인 경우 공장등록증 필수 <건축물관리대장> (+임차인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추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시설면적이 500㎡ 미만인 경우 건축물관리대장으로 증빙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대장에 표기된 용도가 제조용도(제조소/제조장/공장)이어야 함 ※ 일반건축물관리대장 또는 전유부 가능, 표제부 불가(소유주 미표기) 	
	비제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등록증 표기사항만으로는 증빙되지 않으며, 반드시 관련된 등록증 또는 허가증이 있어야 지원가능 - 지원업종 및 증빙서류는 뒷장의 경영안정자금 [구비서류]에서 확인 	
추가 요건	일반 우대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대증빙서류 : 우대기업으로 구분된 인증서(각 해당기관을 통해 발급, 세부 내용은 뒷장의 경영안정자금 [구비서류]에서 확인)첨부시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기업, 장애인 기업, 유망/비전/중견사다리기업을 제외한 우대증빙서류는 모두 1회에 한하여 적용가능 	
	목적성 지원 확인 사항	산업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시 전입기업 : 이전일로부터 1년 이내 - 신규산단입주기업 : 강화 및 서운산단 입주(입주일로부터 1년 이내) 및 입주예정기업 - 산단 지식산업센터입주기업 : 산단단지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입주일로부터 1년 이내) - 재해기업 : 자연재해 또는 인적재난의 피해를 입은 기업 (피해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해외유턴기업 : 해외사업장 2년이상 운영한 기업이 해외사업장 청산 또는 유지 하면서 인천관내 공장을 신설하고 사업자등록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수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실적 또는 수출계약에 따라 수출자금이 필요한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실적의 1/2이내 또는 수출계약의 90%이내 지원
		창조 경제 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7년 이내의 기업으로 창의적 아이디어로 성장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추천하는 기업 (창조경제혁신기업 지원은 1회에 한함)
		고 성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성장기업 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개년도 매출액 평균 증가율 20% 이상인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출액 : 최근 결산 3개년도의 손익계산서 매출액 <고성장기업 I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결산년도 매출액 100억원 또는 최근월 고용인원 100명 이상 기업으로, 3개년도 매출액 평균 증가율 5% 이상 (증빙서류는 고성장기업 I 과 동일)
		고 용 창 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창출기업 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개년도 종업원수 평균 증가율 15% 이상인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업원수 : 최근 3개년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간이세액 인원(마지막월 기준) <고용창출기업 I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결산년도 매출액 100억원 또는 최근월 고용인원 100명 이상 기업으로, 3개년도 고용인원 평균 증가율 5% 이상(증빙서류는 고용창출기업 I 과 동일) <고용창출기업 II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 또는 정부 선정 일자리창출우수기업 인증서 구비 (유효기간 확인) <고용창출기업 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일 기준 직전 1년간 종업원수 10명 이상 증가한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업원수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반기신고업체의 경우 고용보험가입자 명부)

※ 고성장기업 I·II 자금은 3개년도 사업실적 평가(19년 결산기준, 2017.1.2 이후의 창업기업은 해당안됨)
 ※ 고용창출기업 I·II 자금은 종업원 최소인원이 5인 이상이어야 함(2017.1.2 이후의 창업기업은 해당안됨)

session1

이자차액
보전

■ 지원제외대상

- 구(區) 경영안정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인 기업
- 시(市) 경영안정자금(이자차액보전 및 협약보증 포함,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제외)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인 기업
 - ※ 시 경영안정자금 지원결정잔액(또는 매출액 대비 지원한도)이 남아 있는 업체는 잔여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총 지원횟수는 제한하지 않으며, 이자차액보전 내 일반기업자금일 경우 접수한도 초과 시 평가표를 통해 심사
 - ※ 우대기업 적용은 기본적으로 증빙서류 유효기간 이내 1회에 한하여 지원
 - ※ 시(市) 8대 전략산업 영위기업, 산업확충기업자금, 창조경제혁신기업자금 등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는 경우에도 1회에 한하여 지원
 - ※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 우수기업(유망, 비전, 중견성장사다리)은 항시 우대
- 동일기업 중복지원 제한 : 동일연도 중앙부처 및 지자체 동일분야 자금 기 수혜기업
 - ※ 시 선정 우수기업(유망중소기업, 비전기업, 중견성장사다리기업) 및 목적성 자금은 적용 제외
- 중앙부처 및 지자체 지원자금이 최근 5년간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 제한
 - ※ 시 선정 우수기업(유망중소기업, 비전기업, 중견성장사다리기업) 및 목적성 자금은 적용 제외
- 부동산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등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조장업
-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 시장 상장기업
 - ※ 시 선정 우수기업(유망중소기업, 비전기업, 중견성장사다리기업) 적용 제외
- 휴·폐업중인 기업, 제조업 전업율 30% 미만인 기업(제조업체에 한함)
- 공정위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계회사로 지정된 중소기업 (필요 시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 세금(국세 및 지방세)을 체납 중인 기업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0. 1. 20 ~ 자금 소진 시까지 (일반-분기별, 목적-상시)
- 신청방법 : 비즈오케이 사이트 온라인신청
- 신청서류 : 세부내용 구비서류부분 참조
- 신청문의 : 인천스마트제조혁신센터 자금담당 ☎(032)260-0623,0622,0621

session1

이자차액 보전

■ 지원이자율

항 목	지원이자율 내용			
기본 지원율	- 기업 대출금리별 기본 지원율(차등지원)			
	지원 업체 용자금리	지원이자율	지원 업체 용자금리	지원이자율
	1.01% ~ 1.50%	0.2%	5.01% ~ 5.25%	1.2%
	1.51% ~ 2.00%	0.3%	5.26% ~ 5.50%	1.3%
	2.01% ~ 2.50%	0.4%	5.51% ~ 5.75%	1.4%
	2.51% ~ 3.00%	0.5%	5.76% ~ 6.00%	1.5%
	3.01% ~ 3.50%	0.6%	6.01% ~ 6.25%	1.6%
	3.51% ~ 4.00%	0.8%	6.26% ~ 6.50%	1.7%
	4.01% ~ 4.33%	0.9%	6.51% ~ 6.75%	1.8%
	4.34% ~ 4.66%	1.0%	6.76% ~ 7.00%	1.9%
4.67% ~ 5.00%	1.1%	7.01% ~	2.0%	
※ 대출금리는 변동 및 고정으로 기업체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며 금리는 은행 여신 규정에 따라 은행과 기업 간에 자율적으로 결정				
추가 지원율	- 우대 및 목적성지원의 추가지원율 · 일반지원 우대기업 추가지원율 : 0.5% ~ 0.7% · 목적성지원 추가지원율 : 0.2% ~ 1.0%			

■ 최종지원율 산정

최종 지원율	- 기본지원율과 우대(추가)지원율을 합산하여 최종지원율 산정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기 본 지 원 율</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우 대 지 원 율</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합 산 지 원 율</div>	- 금리구간에 따른 기본지원율(차등지원율)과 우대(추가)지원율이 합산됨	

■ 횡수 및 한도산정 기준

- 총 지원횡수는 제한하지 않으며, 일반기업자금일 경우 접수한도 초과시 심사표를 통해 횡수에 대해 심사함
- 우대기업 적용은 기본적으로 증빙서류 유효기간 이내에 **회차 구분 없이 1회에 한해서 우대**
-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 함께하는 인천사람들 추천기업은 회차 제한 없이 항상 우대
- 시 우수기업(유망중소기업,비전기업,중견성장사다리기업 등)도 2020년부터 회차 제한없이 항상 우대
- 일반자금은 현재 상환중일 경우 현재 기준의 최대한도(5억원) 이내에서 잔여한도 지원
- 재신청 가능시기 : 대출기간 만료 시, 조기 상환시(대출금완제 확인서 제출)
- 지원한도는 총매출액의 1/3을 초과할 수 없음
 - ※ 매출액1.5억원 미만기업 및 창조경제혁신자금 예외

03

경영안정자금 세부내용

session1

이자차액 보전

■ 창업1년미만(또는 결산미도래)기업 한도산정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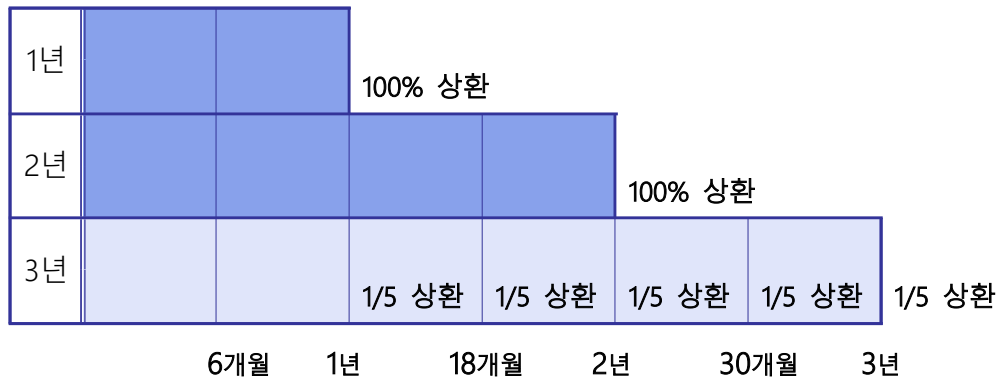
- 창업1년미만 및 결산기간 미도래기업은 재무제표 생략가능
- 매출미증빙시 최소한도 5천만원으로 추천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제출시 과세기간을 연간으로 환산하여 매출액을 산정함
- 결산재무제표 기간이 1년이 안 되는 경우 최근결산년도 재무제표증명원의 과세기간을 연간으로 환산하여 매출액을 산정함

■ 상환방법

- 경영안정자금의 지원기간 : 1년, 2년, 3년 ※ 연장지원 없음

1년	2년	3년
1년 만기 일시상환	2년 만기 일시상환	6개월 거치 5회 균등분할 상환

- 대출상환방법 예시



- 대출기간 1년 선택 업체 : 만기 시 원금 100% 상환
- 대출기간 2년 선택 업체 : 만기 시 원금 100% 상환
- 대출기간 3년 선택 업체 : 대출 후 1년이 되는 시점부터 1/5씩 6개월 단위로 원금 상환 (총 5회 납입)

※ 단, 수출자금 대출기간 6개월, 1년은 모두 만기일시 상환

※ 단, (사)함께하는인천사람들 추천기업 자금 대출기간 4년은 1년 거치 36개월 균등분할 또는 48개월 균등분할 상환

※ 원금의 (분할)상환 연체에 따른 발생이자(상환일이 비영업일일 경우 상환 연장에 따른 휴일분 이자도 포함)는 기업이 부담함

※ 경영안정자금의 보전금리 적용은 정해진 용자기간 상환스케줄과 일치되는 대출에 한하며, 그와 상이한 대출에 대해서는 이차보전 스케줄이 관리될 수 있더라도 지원이 불가함

03

경영안정자금 세부내용

session1

이자차액 보전

■ 지원한도 및 내역

① 일반지원

구 분	업체당 지원한도	지 원 내 역	대출기간
일반	5억원	이자보전 (기본지원율)	1년, 2년 : 만기 일시상환 3년 : 6개월 거치 5회 균등 분할상환
우대	5억원~30 억원	이자보전 (기본+우대지원율)	※(사)함께하는 인천사람들 지원대상 : 1년 거치 36개월 균등 분할상환 또는 48개월 균등 분할상환

※ 우대기업 구분

대상구분	업체당 지원한도	지 원 내 역
FTA 인증 수출기업, FTA 활용 성공사례 수상기업, 8대 전략산업, 소상공인 경영대상 수상기업, 가족친화기업, 품질우수제품 선정기업, 벤처기업	5억원	이자보전 (기본+우대지원율 0.5%)
유망중소기업, 아름다운공장 선정기업, 중소기업인대상 수상기업('18년 이전 수상자)	10억원	
비전기업	20억원	
중견성장사다리기업, 중소기업인대상수상기업('18년 수상자부터 적용)	30억원	
여성기업	5억원	이자보전 (기본+우대지원율 0.55%)
장애인기업	5억원	이자보전 (기본+우대지원율 0.7%)
(사)함께하는인천사람들 추천기업	2천만원	이자보전 (기본+우대지원율 0.5%)

03

경영안정자금 세부내용

session1

이자차액 보전

■ 지원한도 및 내역

② 목적성지원

구분	지원대상	지원 한도	지원내역	지원 기간
산업 확충	해외유턴기업	30~50억원	이자보전 (기본+추가지원율 0.5%)	1,2,3년 (일반지원 조건과 같음)
	우리시 전입기업	30억원		
	강화산업단지 입주기업	5억원		
	서운산업단지 입주기업	15억원		
	산단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5억원		
	재해기업	10억원		
수출	최근 1년간 수출 실적 또는 수출계약 실적이 있는 기업	20억원	이자보전 (기본+추가지원율 0.2%) * 은행 금리우대 별도	6개월, 1년 (일시상환)
창조 경제 혁신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추천기업	3억원	이자보전 (기본+추가지원율 0.5%)	1,2,3년 (일반지원 조건과 같음)
고성 장 I	최근 3개년도 매출액 평균 증가율 20%이상 기업	20억원	이자보전 (기본+추가지원율 0.5%)	
고성 장 II	매출액 100억원(또는 최근월종업원수 100명) 이상이며, 3개년 매출액 평균 증가율이 5% 이상 기업	20억원	이자보전 (기본+추가지원율 0.3%)	
고용 창출 I	3개년도 종업원수 평균 증가율 15% 이상 기업	20-50억원	이자보전 (기본+추가지원율 1.0%)	
고용 창출 II	매출액 100억원(또는 최근월종업원수 100명) 이상이며, 3개년 종업원수 평균 증가율 5% 이상 기업	20-50억원	이자보전 (기본+추가지원율 0.5%)	
고용 창출 III	시 또는 정부 선정 일자리창출우수기업	20-50억원	이자보전 (기본+추가지원율 0.5%)	
고용 창출 IV	신청일기준 직전 1년간 고용증가 10명 이상	20-50억원	이자보전 (기본+추가지원율 0.5%)	

03

경영안정자금 세부내용

session1

이자차액 보전

■ 구비서류

① 일반기업자금

공통 및 업종증빙 서류

제 출 서 류		비 고						
공 통	경영안정자금 사용계획서 1부 (소정양식)	※ 신청서는 별도첨부 없이 온라인에서 작성 ※ 계획서 및 동의서는 접수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 법인전환 기업은 업력인정을 위해 법인전환서류를 추가로 업로드해야 함 : 개인 - 폐업사실증명원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포괄양수도서류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및 서약서 각 1부 (소정양식)							
	최근 결산2개년도 재무제표증명원 2부 ※ 창업 1년 미만의 경우 추정재무제표 제출 생략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3부 ※ 최근 1개월분, 최근결산 2개년도의 마지막월 신고서 2개월 분							
	사업자등록증 1부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업 종 증 빙	<table border="1"> <tr> <td rowspan="2">제조업</td> <td rowspan="2"><택1></td> <td>공장등록증명원 1부</td> <td>제조시설면적 500㎡이상 업체는 반드시 필요</td> </tr> <tr> <td>건축물관리대장 1부 (용도-공장, 제조업소/소유주표기) 임대차계약서 1부 (임차공장일 경우)</td> <td>제조시설면적 500㎡미만으로 공장 등록증명원이 없는 업체만 해당 ※ 표제부가 아닌 서류로 확인 요망</td> </tr> </table>	제조업	<택1>	공장등록증명원 1부	제조시설면적 500㎡이상 업체는 반드시 필요	건축물관리대장 1부 (용도-공장, 제조업소/소유주표기) 임대차계약서 1부 (임차공장일 경우)	제조시설면적 500㎡미만으로 공장 등록증명원이 없는 업체만 해당 ※ 표제부가 아닌 서류로 확인 요망	
	제조업			<택1>	공장등록증명원 1부	제조시설면적 500㎡이상 업체는 반드시 필요		
		건축물관리대장 1부 (용도-공장, 제조업소/소유주표기) 임대차계약서 1부 (임차공장일 경우)	제조시설면적 500㎡미만으로 공장 등록증명원이 없는 업체만 해당 ※ 표제부가 아닌 서류로 확인 요망					
	자동차정비업 (종합, 소형)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종합, 소형) 등록증 1부						
	시내버스·택시운송업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 택시운송사업 등록증 1부						
	건설업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증 1부						
	측량업	지적법에 의한 측량업 등록증 1부						
	전기공사업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증 1부						
	정보통신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1부						
	소방시설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 1부						
	무역업	무역업고유번호부여증 및 수출실적증명 각 1부						
	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	입주확인서 1부 (정부·인천광역시 지정 창업보육센터, 제물포스마트타운 창업보육실)						
	(사)함께하는인천사람들 추천업체	(사)함께하는인천사람들 추천서 1부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지식기반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	해당 등록증 또는 허가증 1부 (업종범위는【붙임】참고) ※ 사업자등록증 기재내용은 업종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음							

03

경영안정자금 세부내용

session1

이자차액 보전

■ 구비서류

① 일반기업자금

가점사항 추가 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관련문의
8대전략산업 (우대증빙과 중복)	전략산업 확인서 (소정양식), 매출증빙서류 별첨	-
고용우수인증기업 (우대증빙과 중복)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및 고용우수기업 인증서 1부 (중앙 및 인천시 선정,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선정) ※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발급서류는 우대지원 불가하며 평가시 가점 처리함	☎ 440-4234
산업단지입주기업	입주계약(확인)서 (산업단지 관리기관)	-
복리후생비 증가율 (공통서류와 중복)	최근 결산 2개년도 재무제표 (복리후생비) 최근 결산 2개년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마지막월 신고서 2개월분(종업원수)	-
가족친화기업 및 출산친화기업	가족친화기업 및 출산친화기업 선정서 (정부, 시)	☎ 02-6309-9048
메세나 참여 등 기부기업 (공통서류와 중복)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 (기부금액)	-

우대기업 증빙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비고
시지정 유망중소기업	인천시지정 유망중소기업 선정서 1부	☎ 440-4298
시지정 비전기업	인천시지정 비전기업 선정서 1부	☎ 440-4298
중견성장사다리기업	인천시지정 중견사다리기업 선정서 1부	☎ 440-4298
중소기업인대상 수상업체	인천시지정 중소기업인대상 선정서 1부	☎ 440-4255
소상공인경영대상 수상기업	인천시지정 소상공인경영대상 선정서 1부	☎ 440-4212
장애인 기업	장애인기업확인서 1부 (www.smpp.go.kr 발급)	☎1666-9988
여성기업인	여성기업인확인서 1부 (www.smpp.go.kr 발급)	☎ 260-3602
가족친화기업	가족친화기업 선정서 (정부, 시)	☎ 02-6309-9048
아름다운공장선정 기업	인천시지정 아름다운공장 선정서 1부	☎ 440-4297
품질우수제품 선정 기업	인천시지정 품질우수제품 선정서 1부	☎ 440-4297
FTA 인증 수출기업	관세청 인증수출자 선정서 1부	☎ 452-3632
FTA 활용 성공사례 수상기업	인천시선정 FTA 활용 성공사례 수상 선정서 1부	-
벤처기업	벤처기업 확인서 1부	-
우리시 8대 전략산업	전략산업 확인서 (소정양식), 매출증빙서류 별첨	※ 확인서는 비즈오케이 다운로드

03

경영안정자금 세부내용

session1

이자차액 보전

■ 구비서류

② 목적자금

공통서류

제 출 서 류	비 고
경영안정자금 사용계획서 1부 (소정양식)	※ 신청서는 별도 첨부 없이 온라인에서 작성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및 서약서 각 1부 (소정양식)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증명원 1부	※ 계획서 및 동의서는 접수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업종증빙서류 (일반지원과 동일)	
사업자등록증 1부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추가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산업 확 충	해외유턴기업	해외사업장 운영 증빙서류(사업자등록, 사업장, 매출 증빙 등) 해외사업장 청산 증빙서류(청산종결 등기신고서, 폐업신고서 등)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우리시전입기업	이전일자 확인서류 ※ 법인(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실증명)
	신규산업단지 입주기업	입주계약서 (1년 이내 입주확인서 제출) 관리기관 발급 입주확인서 이전일자 확인서류(법인등기부등본, 세무서발급 사실증명) ※ 입주 전 / 사유발생 1년 이내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지식산업센터 입주확인서 이전일자 확인서류(법인등기부등본, 세무서발급 사실증명) ※ 사유발생 1년 이내
	재해기업	재해확인서(피해금액 증빙서류 포함), 부대시설 증빙서류, 재해확인증(화재일 경우 화재증명원)
창조경제혁신기업	창조경제혁신센터 추천서 1부 , 창업사실증명원 1부	
수출기업	수출실적증명서 1부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수출계약서류(L/C, T/T, 구매확인서, 계약서 등)	
고성장기업	재무제표 ※ 최근 결산년도 전 2개년도 (2개년도 추가)	
고용창출기업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최근 3개년도 마지막 월 신고서 (3개월 분)	

03

경영안정자금 세부내용

session1

이자차액 보전

■ 구비서류 업로드시 유의사항

업종증빙서류

공장등록증	제조시설면적 500㎡이상일 경우 반드시 공장등록을 필하여야 하고, 사업등록증과 정보가 동일해야하며 관리공단의 도장 날인이 필요
건축물관리대장	사업장 주소지와 동일한 소재지로 용도 및 소유주 확인이 가능한 서류인지 확인하고 반드시 열람용이 아닌 발급용으로 제출 *표제부가 아닌 서류등록
임대차계약서	사업장 주소지와 동일하게 500㎡미만이고 계약서가 작성되었는지 여부와 임대기간이 남아있는지를 확인하여 필요시 재계약하거나 자동연장문구를 삽입하여 임대인/임차인의 도장 날인 후 업로드 ※ 임대인은 건축물대장 소유주와 일치해야 함
업종관련 등록증 및 인/허가증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인 경우 새로 발급받거나(갱신여부 포함) 주소 명기된 경우 사업장 주소지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

공통서류

사용계획서	소정양식 ※ ITP홈페이지나 비즈오케이 공고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계획서는 빈칸 없이 기입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및 서약서	소정양식 ※ ITP홈페이지나 비즈오케이 공고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개인정보처리동의서에는 체크항목 표시, 서명이나 날인 필요 단, 개인 기업이 공동대표일 경우 모든 대표자분의 서류를 전부 등록
최근 결산2개년도 재무제표증명원 2부	국세청 홈텍스에서 출력한 서류나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확인한 증명원 필요 재무제표는 각각 표지 포함하여 원본으로 첫 장부터 끝장까지 업로드 ※ 2017, 2018년도 (2019년도 결산 전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3부	세무대리인이 확인한 서류나 확인이 안 될 경우 전자신고증 추가 ※ 최근결산 2개년도 마지막월 신고서 각 1부, 최근 귀속연월 1부(총 3부)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및 기타서류와 주소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소재지이전하거나 대표자추가 등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최근 서류로 준비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현재 체납된 내역이 없음을 증명해주는 것이므로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하며, 법인은 대표자가 아닌 회사이름으로 발급 단, 개인 기업이 공동대표일 경우 모든 대표자분의 서류를 전부 등록

우대 및 기타서류

우대지원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시지정 우수기업, 벤처기업, 중소기업인대상, 소상공인경영대상 수상기업, FTA 인증 수출기업, FTA 활용 성공사례 수상기업, 우리시 8대 전략산업, 중견사다리기업, 품질우수제품 선정 기업 등은 해당시 업로드 업체명/사업자번호/대표자명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각 항목이 일치하는지 확인,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는 기한 내 해당 여부를 확인 요망
대출금완제 확인서	조기상환한 업체는 해당 지원건의 대출날짜/대출금액/기존만기일/실제상환일이 포함된 대출금완제 확인서를 추가로 등록 *양식은 은행별로 상이

※ 단,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등의 사유로 재발급이 필요한 각종서류는 접수기간내 보완이 가능하나 되도록 미리 발급하여 업로드 요망

03

경영안정자금 세부내용

session1

이자차액
보전

■ 기타 업종범위

제조관련서비스업

산업명	표준산업분류번호
도로화물 운송업	493
해상 운송업	501
화물 취급업	5294
보관 및 창고업	5210
물류 터미널 운영업	52913
화물 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52992
화물 포장, 검수 및 계량 서비스업	52993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오락기 및 도박기계 임대업은 제외)	76390
산업설비, 운송장비 및 공공장소 청소업	74212
폐기물 수집·운반업	381
(기타 환경 정화 및 복원업 포함)	(39009)
폐기물 처리업	382
폐수 처리업	37012

제조관련지식기반서비스업

산업명	표준산업분류번호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62021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1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2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9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1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62010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다만 제조업 지원목적만 해당)	63120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다만 제조업 지원목적만 해당)	63991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70111
농림수산학 및 수의학 연구개발업	70112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70113
전기·전자공학 연구개발업	70121
기타 공학 연구개발업	70129
기타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70119
경제 및 경영학 연구개발업	70201
기타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70209
시장 조사업(여론 조사업 제외)	71400
경영 컨설팅업	71531
토양 및 지하수 정화업	39001
기타 환경 정화 및 복원업	39009
환경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2122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2129
제품 디자인업	73202
시각 디자인업	73203
패션, 섬유류 및 기타 전문 디자인업	73209
물질 성분 검사 및 분석업	72911
기타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	72919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1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2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3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59114

지식서비스업

산업명	표준산업분류번호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74100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75991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75992
포장 및 충전업	75994

03

경영안정자금 세부내용

session2

매출채권 보험

■ 지원대상

- 경영안정자금 지원업종을 영위하면서, 신용보증기금에서 매출채권보험 가입이 가능한 기업
- ※ 신용보증기금 보험취급 규정에 따라 보험료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 지원 제외

■ 지원내용

협약기관	지원항목	지원내용
신용보증기금	매출채권보험 보험료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보험료 : 기업이 부담하는 최종산출보험료의 80% (지원한도 5백만원 이내, 보험료 10% 할인 우대) ■ 보험(보장)금액 : 최대 10억원 ■ 지원(가입)기간 : 1년

- ※ 시(市) 및 구(區) 경영안정자금 지원이력과 상관없이 별도로 지원 가능
- ※ 지원기업이 휴·폐업 또는 보험 중도해지 시, 보험일수 감소에 따른 보험료 감소 및 환급 발생분에 대해서는 보증기관에서 환급

■ 지원제외대상

- 부동산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등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 조장업
-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 시장 상장기업
- 휴·폐업중인 기업, 제조업 전업율 30% 미만인 기업(제조업체에 한함)
- 공정위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계회사로 지정된 중소기업
-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0. 1. 20 ~ 자금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신청서류 : 가입상품 별 상이하므로 보증기관 상담 필요
- 신청문의 : [신용보증기금 인천신용보험센터 ☎\(032\)450-1546, 1541, 1531, 1537](#)

03

경영안정자금 세부내용

session3

협약보증

■ 지원대상

- 인천에 공장 또는 사업장이 소재하는 **창업 7년 이내 기업**으로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신규보증이 가능한 **소재·부품산업 영위기업** 또는 **기술혁신 선도형 기업**

구분	업종
소재·부품 산업영위기업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재·부품업종영위기업 (※ 이자차액보전 지원업종 영위 필수)
기술혁신 선도형 기업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②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의한 기술혁신형중소기업(이노비즈기업) ③ 정책금융기관 등이 공동 제정한 '혁신성장 공동기준'에 따른 혁신성장산업 영위기업 (※ 인천시 지원업종 상관없이 기술력이 있는기업)

■ 지원내용

협약기관	지원항목	지원내용
기술보증기금	보증서 발급 (운전자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증한도 : 5억원 이내 ■ 보증조건 : 1년(보증비율 100%, 보증료 감면 0.2%p)

■ 지원제외대상

- 구(區) 경영안정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인 기업
- 시(市) 경영안정자금(이자차액보전 및 협약보증 포함,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제외)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인 기업
 - ※ 시 경영안정자금 지원결정잔액(또는 매출액 대비 지원한도)이 남아 있는 업체는 남은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 하나의 대출건에 대하여 이자차액보전(市지원)과 협약보증(市지원)은 이중으로 지원받을 수 없음
- 부동산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등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 조장업
-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 시장 상장기업
- 휴·폐업중인 기업, 제조업 전업율 30% 미만인 기업(제조업체에 한함)
- 공정위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계회사로 지정된 중소기업 (필요 시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0. 1. 20 ~ 자금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신청서류 : 가입상품 별 상이하므로 보증기관 상담 필요
- 신청문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으로 문의

04

구조고도화자금 세부내용

session1

지원대상

■ 자금별 지원대상

기계구입자금

- ① 제조업 요건 충족 (제조업 전업률 50% 이상 및 공장등록)
 - 최근 결산년도 손익계산서에서【제품매출】/【전체매출】비율이 50% 이상
 - 공장건축면적 500㎡ 이상 ☞ 공장등록증 필수
 - 공장건축면적 500㎡ 미만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공장/제조소 용도)
- ② 생산시설, 검사장비, 공해방지시설 등을 구입
 - ※ 스마트공장도입우대자금 : “스마트공장보급사업”참여기업으로 당해연도 중기부 스마트공장사업 협약을 체결한 기업 (협약이후 3개월이내)

공장확보자금

- ① 제조업 요건 충족 (제조업 전업률 50% 이상 및 공장등록)
 - 최근 결산년도 손익계산서에서【제품매출】/【전체매출】비율이 50% 이상
 - 공장건축면적 500㎡ 이상 ☞ 공장등록증 필수
 - 공장건축면적 500㎡ 미만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공장/제조소 용도)
- ② 자가공장을 확보하기 위한 공장구입 및 신축, 공장증설을 위한 증축 등
 - (신 축) 현재 임차공장을 운영 중이면서 자가공장을 신설하기 위해 공장설립승인과 건축허가를 득한 기업
 - (매 입) 현재 임차공장을 운영 중이면서 기존공장을 매입하기 위해 공장제조시설 설치승인을 득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기업
 - (증 축) 자가공장을 증설(증설이후 제조면적 500㎡이상)하고자 공장증설승인 및 건축허가를 득한 기업
 - (임대보증금 지원) 공장 제조시설 설치승인을 득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기업
 - (도시개발에 따른 이전대상) 공장이전대상기업이 기존공장(자가)을 폐쇄하고 자가공장을 신축하고자 공장설립승인과 건축허가를 득한기업
 - (리모델링) 구조고도화사업 대상 단지로 선정된 산업단지에 입주한 공장의 담장, 전시장 등 환경개선을 하고자 하는 기업

주차장설치자금

- ① 제조업 요건 충족 (제조업 전업률 50% 이상 및 공장등록)
 - 최근 결산년도 손익계산서에서【제품매출】/【전체매출】비율이 50% 이상
 - 공장건축면적 500㎡ 이상 ☞ 공장등록증 필수
 - 공장건축면적 500㎡ 미만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공장/제조소 용도)
- ② 국가산단입주업체로, 부설주차장을 설치 또는 확대하고자 하는 기업

04

구조고도화자금 세부내용

session1 지원대상

■ 자금별 지원대상

연구소설치자금

- ① 제조업 요건 충족 (제조업 전업률 50% 이상 및 공장등록)
 - 최근 결산년도 손익계산서에서【제품매출】/【전체매출】비율이 50% 이상
 - 공장건축면적 500㎡ 이상 ☞ 공장등록증 필수
 - 공장건축면적 500㎡ 미만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공장/제조소 용도)
- ② 연구를 설치하기 위한 건물신축, 건물구입, 건물 증·개축 등
 - (신 축)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을 받고 연구를 건축하고자 건축허가를 득한 기업
 - (매 입)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을 받고 기존연구소 건물을 구입하고자 매매 계약을 체결한 기업
 - (증·개축)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을 받고 기존연구소 건물을 증·개축 하고자 건축 허가를 득한 기업

벤처창업자금

- ① 창업 7년 이내
- ② 벤처기업(벤처예정포함)이거나 이노비즈기업, 창업보육시설에 입주한 기업 등
 - ※ 두 가지 요건이 서류상 충족되면 신청가능, 추후 기술보증기금에 기술평가 의뢰 후 평가되는 보증금액만큼 벤처창업자금으로 추천함
 - ※ 기술보증기금에서 기술평가등급 B이상인 창업 3년 이내의 기업도 추천가능함

지식산업센터건설자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2의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에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과 건축허가를 득한 사업자

재해기업자금

- ① 경영안정자금 대상 및 구조고도화 대상 전 업종을 영위하면서
- ② 홍수, 태풍 등의 자연재해나 화재, 폭발 등의 인적재난 피해를 입은 기업
 - ※ 피해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04

구조고도화자금 세부내용

session2

지원내용

■ 자금별 지원내용

구분	지원자금		대출한도		대출기간		대출금리
	기	본	10 억원	10 억원	8년(3년거치 5년 분기별)		
기계 · 공장 자금 (300 억원)	기계 구입	자동화	10 억원	10 억원	8년(3년거치 5년 분기별)	I	
		연계운전 (최대2억원)			3년(1년거치 2년 분기별)		
		소기업육성	4 억원	4 억원	8년(3년거치 5년 분기별)		
		연계운전 (최대1억원)			3년(1년거치 2년 분기별)		
	우 대	스마트공장도입		20억원	20억원	8년(3년거치 5년 분기별)	V
		연계운전 (최대4억원)				3년(1년거치 2년 분기별)	
공장 확보	공장확보		10억원	10억원	8년(3년거치 5년 분기별)	I	
	기업부설연구소설치		10억원	10억원	8년(3년거치 5년 분기별)		
	국가산업단지 내 주차장설치		5억원	5억원	8년(3년거치 5년 분기별)		
벤처 창업 자금 (20 억원)	기계구입		7억원	7억원	8년(3년거치 5년 분기별)	II	
	운전자금 (최대3억원)				5년(2년거치 3년 분기별)		
지식산업센터 건설자금 (200억원)			200억원	200억원	8년(3년거치 5년 분기별)	III	
재해자금 (30억원)			2억원	2억원	5년(2년거치 3년 분기별)	IV	

※ 스마트공장도입기업 기계구입자금 연간 지원한도는 150억원으로 한정

■ 자금별 대출금리

구분	지원자금	대출금리	2020년 1분기
I 그룹	기계구입자금, 공장확보자금 (변동)	기준대출금리	2.4%
II 그룹	벤처창업자금 (변동)	기준대출금리 - 0.5%p	1.9%
III 그룹	지식산업센터건설자금 (변동)	기준대출금리 + 0.2%p	2.6%
IV 그룹	재해기업자금 (고정)	무이자	0%
V 그룹	특별자금 (변동)	기준대출금리 - 0.9%p	1.5%

※ 기준대출금리 : 직전분기 종료월에 공시되는 신규기준COFIX 에 따라 연동
(분기별 변동금리 : 1월, 4월, 7월, 10월)

04

구조고도화자금 세부내용

session2

자원내용

■ 자금지원 제외대상

- 시(市) 또는 구(區) 구조고도화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중인 기업
 - ※ 시 구조고도화자금 지원결정잔액(또는 업체별 지원한도)이 남아있는 업체는 남은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동일기업 중복지원 제한 : 정부 및 지자체 등을 통한 시설자금 대출잔액 45억원 이상인 기업
 - ※ 재해자금은 적용 제외
- 정부 및 지자체 지원자금이 최근 5년간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 제한
 - ※ 지식산업센터건설자금 및 재해자금은 적용 제외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미등록 공장
 - ※ 공장건축면적 500㎡ 미만의 소기업은 적법한 건축물(용도 : 공장, 제조소)일 경우 가능
- 제조업인 경우 전업률이 50% 미만인 기업 (기계·공장자금만 해당)
 - ※ 재해자금은 제조업전업률이 30% 미만인 경우 지원 제외
- 휴·폐업 중인 기업
- 중고 시설 및 기계를 구입하고자 하는 기업
-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 최근 2년 이내 자체신용으로 공모 회사채 발행한 기업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공정위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계회사로 지정된 중소기업 (필요 시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0. 1. 20 ~ 자금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비즈오케이 사이트 온라인신청
- 신청서류 : 세부내용의 구비서류부분 참조
- 신청문의 : 인천스마트제조혁신센터 자금담당 ☎(032)260-0623,0622,0621

04

구조고도화자금 세부내용

session2

지원내용

■ 자금별 한도산정 기준

공통

- 신청일 현재 업종구조고도화자금 지원 총액(대출잔액기준)이 지원 한도액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주차장설치자금을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
- 백만원 미만의 금액은 지원금액에 산입하지 않고 최저 지원금액은 1,000만원 이상으로 함
- 기 지급된 금액은 지원하지 않으므로 해당금액만큼 감액하여 추천함
- 신청금액이 시설가격을 초과할 경우 초과액은 제외하고 추천함
- 부가가치세는 제외함

기계구입자금

- 견적서(계약서)에 표시된 공급가액을 적용하여 잔금내에서 지원함
- 연계운전자금은 시설자금의 50%범위내에서 제조시설면적에 따라 최대 2억원(자동화사업) 또는 최대1억원(소기업육성) 범위내에서 지원
※ 스마트공장도입기업 기계구입자금은 최대 4억원내에서 연계운전자금 지원
- 중고기계, 설치이후 잔금지급이 완료된 기계, 금형 및 치공구는 지원에서 제외함
- 외산기계는 신청일 현재 고시환율 중 전신환(고객이 살 때)금액으로 계산하여 초과액은 제외하고 추천함
- 외산기계의 구입가격은 CIF(도착항 인도가격)이하를 기준으로 함

공장·주차장·연구소 자금

- **부지매입비는 지원하지 않으며, 건물분 구입에 한해서만 지원**
- 건물분 산정은 건물분 잔금내에서 대출 해당년도 건물시가표준액으로 지원하고 실거래가격(건물분 잔금)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을 경우 거래가격으로 지원함 ※ 건물분 시가표준액 : 인천시 전자납부시스템 공시내용 확인
 - ▶ 준공 전으로 시가표준액 조회 불가시 거래가격으로 지원함
 - ▶ 집단중도금대출건도 잔금대출시 시자금 추천한도에 포함하여 지원
- 공장신축자금은 견적서(계약서)에 표시된 공급가액을 적용하여 잔금내에서 지원함
- 주차장설치자금은 업종구조고도화자금 지원총액 한도 10억원을 초과하여 지원가능(최대 5억원)
※ 주차장 설치자금은 공장신축자금과 같이 지원받을 경우 법정대수 초과분에 대해서만 지원함

벤처창업자금

- 운전자금만도 3억원 이내에서 신청 가능
-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평가금액으로 추천금액이 결정됨

지식산업센터건설자금

- **부지매입비는 지원하지 않으며, 건설자금에 한해서만 지원**
- 건설자금은 도급계약서에 표시된 공급가액을 적용하여 잔금내에서 지원함

재해기업자금

- 피해금액 범위 이내에서(최대 2억원)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 횡수제한, 중복지원, 매출액 상관없이 지원 ※ 전체 지원규모 이내에서 지원함

04

구조고도화자금 세부내용

session3

구비서류

■ 자금별 구비서류

구분	제출서류	
공통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1부 ② 최근결산년도 재무제표 1부 ※ 창업1년 미만의 경우 제출생략 ③ 공장등록증 1부 (공장건축면적 500㎡미만인 경우 건축물관리대장 (용도 : 공장, 제조소) 및 임대차계약서) ④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⑤ 사업계획서 1부 (소정양식) ⑥ 개인정보처리동의서 1부 (소정양식)	
기계 · 공장 자금	기계구입	① 구입시설견적서(계약서) 및 카달로그(도면) 각 1부 ※ 스마트공장도입기업 우대자금은 중소벤처기업부 협약서 추가
	공장확보	① 공장설립승인서 1부 (산업단지일 경우 입주계약서로 제출) - 매입일 경우 제조시설설치승인서로 제출 ※ 제조시설설치승인서는 업체가 사용 중인 공장이어서 절차상 잔금지급 전 발급이 어려울 경우 잔금지급 후 한달 이내 제출 가능 ※ 공장설립승인서(제조시설설치승인서)는 제조면적 500㎡미만일 경우 제출생략 - 증축일 경우 공장증설승인서로 제출 ※ 증축은 증축 이후 제조면적이 500㎡이상 확보될 경우에 한해 지원 ② 매입 : 검인매매계약서 1부 (또는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1부) 건축 : 건축허가서 및 공사계약서(견적서) 각 1부 ※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은 매매계약서를 포함하여 제출하며, 제조면적이 500㎡미만일 경우 매입건물 건축물대장 제출 ※ 집단중도금 대출 실행기업은 중도금대출 실행내역서 추가 ※ 건축허가서는 허가 범위가 아닐 경우 건축신고필증으로 제출 ③ 현재 공장이 임차임을 증빙서류 각 1부 (임대차계약서, 건축물관리대장, 법인등기부등본) ④ 도시개발에 따른 공장이전 대상기업 확인자료 1부 (해당 시 첨부)
	국기신단 내 공장부설 주차장 설치	① 부설주차장설치계획서 (주차장법에 의해 관련기관에 제출한 동일서류) ※ 법정주차대수 도면 및 추가설치도면 포함 ② 건축허가서 또는 공작물축조허가서 (허가범위가 아닐 경우 신고필증으로 제출) ③ 주차장설치비용 견적서 (또는 계약서) ※ 신축일 경우 견적서 내 주차장공사에 대한 명세서 별도 증빙 ④ 건축물관리대장 (사후에 추가된, 증가된 현황 대조확인)
	기업부설 연구소 설치	①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1부 ② 매입 : 검인매매계약서 1부 (또는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1부) 건축 : 건축허가서 및 공사계약서(견적서) 각 1부 ※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은 매매계약서 포함하여 제출하며, 제조면적이 500㎡미만일 경우 매입건물 건축물대장 제출 ※ 건축허가서는 허가 범위가 아닐 경우 건축신고필증으로 제출
벤처창업자금	① 벤처 등 확인서류 1부 (또는 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 확인서 1부) ② 시설자금일 경우 : 구입시설 계약서(견적서) 및 카달로그(도면) 각 1부	
지식산업센터 건설	① 지식산업센터설립승인서 1부 ② 건축허가서 1부 ③ 건설도급계약서 및 설계도면 각1부 ④ 법인등기부등본 1부	
재해기업	① 재해중소기업 증빙서류 1부 (화재증명원 등 재해확인증, 재해피해확인서, 기타 증빙서류)	

※ 벤처창업자금, 지식산업센터건설자금, 재해자금은 공통서류에서 공장등록증이 없어도 신청가능